



# 보 수 규 정

제 정 일	1979. 3. 1
개 정 일	2024. 4. 1
개정차수	20차
담당부서	경리과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적용범위) 교직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규정에 적용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 제 3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 또는 재직기간,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 또는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보수의 일할계산”이라함은 그달의 보수를 그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 2 장 봉 급

### 제 1 절 호봉획정 및 승급

- 제 4조 (봉급) 교직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 봉급표와 타 대학 봉급 수준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단, 연봉제 및 계약직 교직원은 연봉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09. 2.13, 2016. 9. 1)
- 제 5조 (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이 이를 시행한다.
- 제 6조 (초임호봉의 획정) ① 교직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교직원의 초임호봉은 별표1 및 별표3에 의해 해당직종의 초임호봉표에 의하여 획정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며 경력과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 획정한다.  
 ③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 제 7조 (승진 시 호봉획정) ① 교원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직위에서 별표2에 의하여 호봉을 획정한다.

② 직원(공무원 보수규정 봉급표를 적용받는 직원을 말한다)이 승진하는 경우에는 승진된 호봉에서의 호봉을 별표4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확정한다.

③ 승진되기 전 직급에서 호봉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은 승진된 직급에서 다음 기간을 산입한다.

제 8조 (호봉의 정정) ①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를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호봉의 정정은 당해 교직원의 현재의 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가 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호봉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에게 호봉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제 9조 (정기 승급) ① 교직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한다.

② 교직원의 호봉은 매년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과 12월 1일자로 승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을 받고 있는 교직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승급한다. 이 경우 당해 교직원이 승급제한 사유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 확정되는 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 (특별승급) ①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로서 인사상의 특전으로 승급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달의 다음달 1일자로 1호봉을 특별승급시키며 특별승급일과 정기승급일이 같을 때에는 2호봉을 승급시킨다. 다만, 제안의 채택으로 특별승진된 자는 제외하며, 특별 승급된 후 특별승진되는 자는 특별승진 되기 전의 계급의 호봉에서 1호봉을 감한 후 특별승진되는 계급에서 호봉을 확정한다.

② 승급 또는 승진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진 또는 승급의 제한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로 특별 승급한다.

제11조 (승급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 직 : 18월 ◆ 감봉 : 12월 ◆ 근신 또는 견책 : 6월

3. 직원 근무 평정에 의한 최하등급(열등)에 있는 자 또는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이나 기타의 사유로 승급을 제한 받는 경우의 그 승급제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급 제한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교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직급에서 훈장,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 모범 교직원 포상을 받은 경우 최근 받은 가장 중한 징계처분에 한하여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승급 제한 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제12조 (승급기간의 특례) 전항의 승급제한기간은 제9조 제1항에 의한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1. 병역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한 기간

2.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 종료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다음의 기간이 경과 하여야 한다.

◆ 정 직 : 7년 ◆ 감봉 : 5년 ◆ 근신 또는 견책 : 3년

3. 국제기구, 외국유학, 외국기관 등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한 기간
4.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되었으나 재심에서 의결 요구가 기각 및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었을 때
5. 직무수행능력의 부족, 근무성적의 불량, 근무태도 불성실의 사유로 징계 의결되었으나 재심,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6. 면직·해임 등이 재심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그 면직·해임으로 인한 퇴직 기간
7. 교원인사관리규정 제51조제1항, 제7호 또는 직원인사관리규정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사유로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 다만, 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만 산입하되,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휴직기간은 전 기간을 산입한다. (신설 2012. 7.22)

## 제 2 절 보수지급

제13조 (보수지급 및 지급방법) ① 교직원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의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교직원의 보수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타 대학 보수 수준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6. 9. 1)

[제목개정 2016. 9. 1]

제14조 (보수의 지급일) ①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②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단, 상여금, 정근수당은 지급기간에 속하는 달의 10일로 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1. 3. 1, 2021.10. 1)

③ 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보수의 계산) ① 교직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 승진, 전직, 전보, 승급, 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규정에 의하여 감액된 봉급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 다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동시 2가지 이상의 사유로 봉급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복되는 감액기간에 한하여 이미 감액된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③ 5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월 중에 15일 이상을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 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다만,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파면 또는 해임에 의하여 면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7. 1)

④ 2년 이상 근속한 교직원이 병역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직된 때에는 휴직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 7. 1)

⑤ 제3항에 따라 봉급을 지급하는 경우 징계처분이나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 중인 교직원에게는 감액된 봉급을 계산하여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한다. (신설 2014. 7. 1)

제16조 (퇴직 후의 실제근무 등에 대한 보수지급) ① 규정에 의하여 퇴직 또는 직위해제 처분이 소급

적용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소급 적용된 날 이후의 근무에 대한 일수를 지급한다.

② 면직된 자가 규정에 의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를 위하여 계속 근무한 때에는 1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실제 근무일에 따라 면직 당시의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 징계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의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1/3을 지급한다.
2. 감봉은 1/3을 감액하고 3월 이내로 한다. 단,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의한다.
3. 견책에 대해서는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가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을 적용받게 된 경우에는 징계처분 당시의 법령에 관하여 보수를 감액 지급한다.

제18조 (결근기간의 봉급감액) 결근한 자로서 그 결근일수가 당해 직원의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의 매 1일에 대하여 봉급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제19조 (휴직기간 중의 봉급감액) ① 정관 제40조 제1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교직원에 대하여 그 기간 중의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단, 결핵성 질환으로 휴직한 때에는 1년 이내 그 기간 중의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전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20조 (직위해제기간중의 봉급감액) ① 직위 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한다.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기소되어 직위 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 부터 3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그 3월이 경과한 후의 기간 중에는 봉급의 5할을 지급한다.

②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당해 징계 의결 요구가 기각되거나 징계처분이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의 결정이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로서 직위 해제된 자가 법원에서 무죄의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과 보수의 차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21조 (근속가봉) 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의 2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 제 3 장 수 당

### 제 1 절 직무수당 및 상여수당

제22조 (직책수당) 교직원에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책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3조 (상여금) ①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상여 I (3, 6, 9, 12월), 상여 II (2, 4, 5, 8, 10, 11월)을 지급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상여 I 을 지급하는 달의 말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이전과 그 기준일의 다음 날 이후의 사이(이하 “상여 I 지급기간”이라 한다)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상여 I 지급기간 중 사립학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된 자
3. 상여 I 지급기간 중 봉급지급 일수(공무원 보수규정 제24조 1항)의 15일 미만인 자

② 제1항의 본문의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면직, 휴

직 또는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면직, 휴직 또는 제적된 달에 상여 I 을 지급 할 수 있다.

③ 신규 임용되어 수습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상여 I 을 지급하지 않는다.

④ 상여 I 의 액은 상여 I 지급 해당 월에 실제로 지급할 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봉급지급일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기간의 봉급은 제외한다.

◆ 상여 I = 지급당월에 지급할 연구보조비 및 업무수당+정근수당 가산금

◆ 상여 II = (본봉+연구보조비 및 업무수당+정근수당가산금)당월 지급액×20%

[전문개정 2014. 7. 1]

제24조 (정근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단, 신규임용 되어 수습 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25조 (정근수당가산금) ① 교직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2에 의하여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정직, 감봉, 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4에 따라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 지급한다.

③ 정근수당가산금 지급을 위한 근무연수는 3월 1일, 6월 1일, 9월 1일, 12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26조 (연구보조비 등) 교원에게는 직무의 곤란성 및 직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보조비, 직원에게는 업무수당을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제27조 (삭제 2023. 3. 1)

## 제 2 절 가계보전수당

제28조 (가족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준용하여 지급한다. 단, 부양가족신고를 하지 않아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도 불구하고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 3. 1)

제29조 (삭제 2021.10. 1)

## 제 3 절 특수근무수당

제30조 (특별근무수당) 교직원 중 특수업무에 종사하는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품의에 따라 특수근무수당(자격수당)을 지급한다.

## 제 4 절 초과근무수당

제31조 (시간외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1)

제32조 (야간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1)

제33조 (휴일근무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0. 3. 1)

## 제 4 절의 2 실비변상 등

제34조 (직급보조비) 직원에게 직급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제35조 (정액급식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액급식비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3. 1)

제36조 (삭제 2011. 3. 1)

제37조 (연가보상비) 국고보조금 및 재정지원사업에서 연가보상비를 지원하는 계약직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10. 1]

제38조 (명절휴가비) ①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신규임용되어 수습중인 교직원에 대해서는 임용일로부터 3월의 수습기간 중에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39조 (삭제 2011. 3. 1)

## 제 5 절 기타수당

제40조 (삭제 2011. 3. 1)

제41조 (겸직 수당) 교직원 중 겸직자에게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겸직 수당을 지급한다.

제42조 (관리업무 수당) 총장, 부총장 및 사무국장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관리업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9. 2.13, 2011. 3. 1, 2019. 1. 1)

제43조 (삭제 2024. 4. 1)

제44조 (삭제 2014. 7. 1)

제45조 (입시수당) ① 입시업무에 참여한 교직원 및 외부 참여자에게 입시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시수당의 지급대상 및 기준 등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10. 1]

제46조 (연구수당) ① 교내 연구과제(자유공모 및 정책과제 등)에 참여한 교직원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10. 1]

제47조 (성과급) ① 대학의 재정지원사업 등에 기여한 교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급에 관한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여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1.10. 1]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8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경력환산율표

종 별	경 력 사 항	환산율(%)
1종	1. 초, 중등, 대학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2. 국가(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으로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3. 군에서 의무 복무한 경력	100%
2종	1. 각종 공공단체에서 채용될 직무와 동일한 직에 근무한 경력 2. 국가기술자격증 취득후 그 자격과 동일한 직에 근무한 경력 (다만 본교의 임용요건과 동일할 때에 한하여 인정) 3. 본교에서 계약직원으로 근무한 경력	80%
3종	1. 회사(법인)에서 채용될 직무와 동일한 직에서 근무한 경력	60%
4종	1. 기타 1내지 3종에 속하지 않는 기관이나 업체에 근무한 경력	30%



## 직원 호봉사정표

종 고 급 대	초 급 대	대 급 대	호봉 직급	승급기간 : 1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17	2급 (참여)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17	-15	3급 (부참여)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17	-15	4급 (참사)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8	-15	5급 (부참사)	-15	-14	-13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2	6급 (쿠사)	-12	-11	-10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	-9	7급 (부쿠사)	-9	-8	-7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9	-6	8급 (서기)	-6	-5	-4	-3	-2	-1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6	0	9급 (부서기)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비밀】

【별표 4】

### 승진시 호봉획정표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승진전호봉	승진후호봉
1	1	12	11	23	22
2	1	13	12	24	23
3	2	14	13	25	24
4	3	15	14	26	25
5	4	16	15	27	26
6	5	17	16	28	27
7	6	18	17	29	28
8	7	19	18	30	29
9	8	20	19	31	30
10	9	21	20	32	31
11	10	22	21		